## 수 원 회 생 법 원

#### 제 107 단독

우16512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 (하동) / ☎ 031-210-1388 / 팩스 031-214-1109

시행 일자 2024. 11. 6.

수 신 수원회생법원 관리위원회

참 조 수원회생법원 관리위원회 관리위원

제 목 파산관재인선임 의견조회

- 1. 채무자 최병선에 대한 이 법원 2024하단13732 파산선고 신청사건과 관련된 내용입니다.
- 2.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 제1항에 의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니, 2024. 11. 11.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(아래 □에 표시하여 주시고,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기재하여 주십시오).

### 다 음

채무자의 파산관재인으로 공인회계사 차국환을 선임함에 관한 의견

판사 원운재



## 의 견 서

수원회생법원 제107단독 귀중

의 견 :

- □ 위 채무자의 파산관재인으로 공인회계사 차국환을 선임함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.
- □ 위 채무자의 파산관재인으로 공인회계사 차국환을 선임함은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.

※ 기타의견:

2024. 11.

수원회생법원 관리위원회



: 2024.11.12.10:30

: 2025. 05. 15 11: 46

# 영 수 증

수원회생법원 제107단독 귀하

사 건 2024하단13732 파산선고 2024하면13732 면책

채 무 자 최병선

아래 서류는 2024. 11. 12. 10:30에 틀림없이 영수하였습니다.

- 1. 선임증
- 1. 파산선고결정 요지

2024. 11. 12.

영 수 인 파산관재인 공인회계사 차국환 (서명 또는 날인)